

제341회 제1차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3. 8. 30.(수)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336
발의일자	2023. 8. 17.
회부일자	2023. 8. 22.



교 육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장중찬)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배진석 의원 외 25명

2.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4조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존속기한(2023.12.31.)이 도래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제명 변경
- 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용어 변경
- 다. 기금을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함
- 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함
- 마. 통합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신설함

바. 재정안정화 계정의 조성 및 용도에 관하여 일부 개정함
사. 경과조치

-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
-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4.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5. 입법예고 결과: 의견없음

6. 관련부서 협의

- 가. 규제심사: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나. 부패영향평가: 부패 유발요인 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 라. 해당부서의견: 의견없음
- 마. 예산조치: 조례안 개정에 따른 비용 수반 요인 없음

7. 검토의견

가. 제안취지

-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4조 삭제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교육재정안정화

기금 존속기한(2023.12.31.)이 도래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안 제1조는 조례안의 제정 목적을 규정함
- 안 제2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3조는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변경한다고 규정함
-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용도와 통합기금의 적립과 사용에 대한 기준을 규정함
-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통합기금의 관리와 운용,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규정함
- 안 제8조는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공무원을 지정하도록 규정함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 도모를 위해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절할 수 있는 통합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 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간에 재원을 예탁 및 예수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은, 법 및 조례 등에 따라 당해 지출계획과 운용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어 여유재원이

매우 한정적이므로, 긴급한 세입 감소와 같은 위기상황이나 코로나19와 같이 예기치 못한 대규모 재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고, 특히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더라도 활용하지 못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음.

- 본 조례안은, 여유재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적기에 활용할 수 있게 되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